

평가지표 33 여가활동 프로그램	수급자의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점수 2 (공생 4)
----------------------	--------------------------------------	----------------------

수급자 상태에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지 평가합니다.

평가기준	평가
① 수급자 상태에 맞는 여가프로그램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한다.	기록
·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일자 ·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 등에 따라 모든 수급자를 그룹별로 분류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해야 함	
② 여가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주 2회 이상 실시한다.	기록
· 확인사항: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내용 · 그룹별로 최소 주 1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함	
③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보호자) 의견 수렴을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반영한다.(시설만 해당)	기록

기준	점수	채점기준
①	0.8	평가기준을 충족함 [부분점수]
②	0.8	평가기준을 충족함
③	0.4	평가기준을 충족함

▣ 지표적용기간: 2022.1월 ~ 2025년 평가일

- 기준①번의 매년 1회 이상 수립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기준③번의 그룹별 반영 여부는 평가계획 공고월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 확인방법

기준①,②

- 모든 수급자에게 여가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단체, 그룹, 개별 프로그램 제공 등 모두 인정함
-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모든 수급자가 주 1회 이상 참여 하는지 확인한다.
- (예시) 주 2회 프로그램 실시 기준

그룹	프로그램 실시		결과
그룹이 2개인 경우(A,B)	A그룹 주 1회, B그룹 주 1회	총 2회	인정
그룹이 3개인 경우(A,B,C)	각 그룹별 주 1회	총 3회	인정
그룹이 4개인 경우(A,B,C,D)	각 그룹별 주 1회	총 4회	인정

- 프로그램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관련자료를 확인하여 인정한다.
- 동일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진행한 경우 그룹별 진행과정과 내용(수준 및 난이도)이 각 그룹의 특성에 맞추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 한 가지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한 경우 인정하지 않는다.
- 종교활동은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어르신의 선호도와 욕구에 따라 분류
 - 예)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반, 체육을 좋아하면 운동 반, 미술을 좋아하면 미술반
 - 체육에는 모든 신체활동이 포함 ,미술은 (그리기, 만들기 포함)

기준③

- 그룹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여가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나 보호자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그룹별로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 확인한다.

▶ 프로그램 작성 (인지,여가)

- ▶ 기관기준으로 여가프로그램을 주2회 이상 실시
 - 그룹별로 주 1회이상 프로그램 제공시 (수급자 기준으로 주1회 이상 참여)
 - 모든 수급자는 그룹에 포함
- ▶ 케어포 프로그램 일지 작성시 특이사항은 평가 항목이 아님.

- 미참여 시에만 특이사항 작성
- 참여가 불가능 한 수급자는 계약의사의 근거자료 받음

2025년 Q98	프로그램 계획 후 대상자가 변경될 때 대상자명을 반드시 수정 작성하여야 하나요?
○ 프로그램 계획 작성 시 명확한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수사항을 ‘대상자명’으로 명시하였으나, 수급자의 입·퇴소, 기능상태 변경으로 인한 그룹 변경의 사유로 대상자가 자주 바뀔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대상자명’에 수급자의 성명 대신 해당 프로그램 대상 군(거동 시 부분도움이 필요한 수급자 등)을 기재한 경우에도 인정합니다. ※ 공생 해당사항 없음	
2025년 Q99	그룹별로 프로그램 제공 후 프로그램 일지를 그룹별로 작성해야 하나요? 통합하여 기록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프로그램 계획은 분류된 그룹별로 프로그램명, 목표, 대상자명, 내용, 횟수, 작성일자 등을 기록해야 하며, 프로그램 실시 기록은 일자, 시간, 진행자명, 참석자명, 진행 내용을 기록하며 그룹별 실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일지의 작성 방법은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프로그램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계획하고 실시하였는지 확인되어야 인정함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 Q1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 주야간보호를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실에서 프로그램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경우, 급여종별로 일지를 작성해야 하나요?
○ 병설로 운영하는 기관에서 급여종별로 수급자를 모아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더라도, 급여종류별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실시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획서·프로그램일지 작성은 급여종류별로 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5년 Q101	신체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 프로그램,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각 그룹이 동일해도 되나요?

○ 수급자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체기능 프로그램의 그룹화는 '신체기능상태 등', 인지기능 프로그램의 그룹화는 '인지기능검사결과 등', 여가 프로그램의 그룹화는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 등'을 반영하여 분류합니다.

○ 예를 들어, 욕구사정, 위험도 평가 등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신체기능 프로그램의 그룹화이며, 인지기능검사(MMSE 등) 결과를 토대로 그룹을 나누는 것은 인지기능 프로그램의 그룹화에 해당합니다. 다만, 여가 프로그램에서도 프로그램 목표와 내용에 따라 인지기능을 고려하여 나눌 필요가 있다면 인지기능검사 결과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다빈도
Q&A Q102

명절이나 공휴일이 포함된 주에도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 수급자에게 다양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 평가기준에 명시된 대로 활동 주기를 충족해야 인정합니다. 프로그램 실시에 대해 명절, 공휴일 등의 미실시 사유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025년 다빈도
Q&AQ103

신체기능·인지기능 프로그램은 사회복지사, 여가프로그램은 요양보호사가 실시해도 되나요?

○ 평가매뉴얼에서는 프로그램 제공자의 직종은 평가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 다빈도
Q&A Q104

매번 똑같은 사유(거부, 와상, 인지장애 등)로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어르신들은 매번 불참사유에 대해 기록을 해야 하나요?

○ 최초 불참사유 작성 후 신체, 인지 상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 경우(완전와상, 인지장애 등), 최초 작성내용으로 확인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모든 수급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요구 등을 파악하여 음악 듣기 등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 및 제공을 권고합니다.

○ 수급자 본인의 거부인 경우, 매번 수급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설득해서 수급자가 가능한 한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사유가 계속 기록되어야 하며, 수급자의 요구 및 의견수렴과 사례회의 등에서 논의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2025년 다빈도 Q105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수렴과 의견반영을 그룹별로 진행해야 하나요? 수급자 별로 진행해야 하나요?
○ 평가지표 31(29)신체기능프로그램, 평가지표 32(30)인지기능프로그램, 33(31)여가활동프로그램 기준③에 따라 분기별 의견수렴을 1회 이상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반영해야 합니다. 그룹별로 분기마다 의견수렴 여부를 확인하며, 프로그램 지표별로 연간 1건 이상 반영하는지에 대해 평가합니다. ※ 공생은 그룹별 의견수렴 해당 없음	

2025년 다빈도 Q&A Q107	여가 프로그램을 주 2회 제공 시 그룹별로 나눠서 해야 하나요? 주 2회 실시한 것을 전체 그룹에 적용해도 인정되나요?
○ 여가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상태와 욕구를 반영하여 그룹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각 그룹별로 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평가기준을 충족합니다. ○ 따라서,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한 번 실시한 것을 각 그룹별로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생은 그룹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함	

2025년 다빈도 Q&A Q108	생신잔치는 여가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 여가활동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여가활동 욕구 충족을 위해 수급자 상태와 욕구에 맞게 그룹화 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특정 수급자를 위한 행사로 진행되는 생일잔치 활동은 여가활동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5년 다빈도 Q&A Q109	기관에서 시행하는 활동 중 생신잔치, 종교활동, 이·미용봉사가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

○ 해당 활동은 프로그램 관련 평가지표의 방향성에 따라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질의하신 활동에 대해 평가지표 방향성에 따른 관련 지표를 안내하오니 참조바랍니다.

기관 활동	생신잔치		종교활동	이미용 제공
관련 평가지표	평가지표 14(14)① 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 참여 행사	평가지표 14(14) ③ 자원봉사	평가지표 14(14)③ 자원봉사	평가지표 14(14) ③ 자원봉사 (이·미용 비급여항목 수급자 미청구 확인)

○ 한 활동에 대해 여러 지표 및 기준 중복적용 시 불인정